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2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1년 3월 9일)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 제안이유

- 민원모니터의 위촉·해촉 규정을 구체화 하고,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나. 민원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위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민원모니터 해촉 사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민원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민원모니터가 시정·계도하는 활동이 아닌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안중심의 활동인데 신분증이 꼭 필요한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민원모니터 사기양양 측면에서 신분증을 주는 것이며, 교육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음.
○ 민원모니터 활동도 중요하지만 통장들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모니터화할 필요가 있음. 통장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활용해야?	○ 동장회의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안을 강구하겠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역할 및 활동) ① 민원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2.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②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터넷 공모를 통하여 민원모니터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별 1명씩 위촉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13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모니터를 위촉할 경우에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기간이 긴 사람에 대하여 우선 위촉한다.

제6조(임기) 민원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민원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모니터로 활동하는 경우

4. 3개월 동안 제보 실적이 없는 경우

5. 인터넷 등에서 발췌한 사항을 제보하는 등 올바른 모니터 활동을 위반한 경우

6.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7.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제8조(교육 등) 시장은 모니터의 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원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